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부여지역발굴조사 신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문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(부여지역발굴조사/특별연구원 나급, 연구원)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1일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(휴대전화 뒷자리 번호)

- 부여 관북리유적(GIS 및 디지털/ 연구원)
 - 관북01-1 유○○ (3318), 관북01-2 김○○ (9468)
- 부여 부소산성(기획연구/ 특별연구원)
 - 부소01-1 최○○ (4503), 부소01-2 신○ (3509)
- 부여 부소산성(고고학 / 특별연구원)
 - 부소02-1 안○○ (9414)
- 부여 부소산성(고고학 / 연구원)
 - 부소03-1 김○○ (7116), 부소03-2 이○○ (9506), 부소03-3 장○○ (4840)

2.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

- 일 시: **2024. 3. 25. (월), 14:00**
- 면접장소: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회의실(2층)
[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34(외리 산1-1)]
- 대기장소: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(1층)

3 기타사항
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불입의 서류[불입1, 불입2]를 작성하여 면접당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을 지참하고, **면접시작 20분전(13시 40분)까지 대기실로 입실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수험표 당일 교부
- 지정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연락과 홈페이지에 변경 안내 예정입니다.
-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응시자는 발열(37.5도 이상)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채용 담당자(041-830-56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년 3월 29일 (금) 예정

- 문화재청 및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

불입 1.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

2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 끝.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

(서명)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귀하

